

의안번호	제 701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(제      회)

##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9월 29일

##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70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9월 29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# 2. 기관별 출연 개요

연 번	대상기관	출연목적 및 필요성	출연금액 (단위:천원)	관계법령 (출연근거)
1	충북 연구원	- 새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정책 및 기능 강화를 위해 (재)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	3,674,000	▶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 ▶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
2	한국 지방행정 연구원	-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위해 (재)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	200,000	▶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」 제3조3항
3	충북 인재양성 재단	-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	650,000	▶ 「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」 제8조
4	지방 공기업 평가원	-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	60,000	▶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제3항

### 3. 주요내용

#### ① 충북연구원 인력 충원 및 운영 출연금 지원 : 3,674백만원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·운영하는 (재)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

####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: 200백만원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3항에 따라 지방 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·조사를 위하여 행안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(재)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※ 전국 시도 균등 출연사업

#### ③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: 650백만원

-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(470백만원) 지원
- 수도권 대학 진학생의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(180백만원)를 장학기금으로 활용(2013년부터 시행)

#### ④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: 60백만원

-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, 경영지도,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운영비 지원

#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**붙임 1**

**1] 충북연구원**

**< 출연 계획 >**

<b>사업명</b>	<b>충북연구원 운영</b>	<b>출자·출연금</b>	3,674,000 천원	
<b>출자·출연권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관명 : (재)충북연구원</li> <li>○ 대표 : 정초시</li> <li>○ 일반현황</li> <li>- 소재지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</li> <li>- 인력 : 정원 39명(현원 32명)</li> <li>- 주요사업 : 지역 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</li> </ul>			
<b>사업내용</b>				
<b>사업개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기간 : 2018. 1. ~ 12.</li> <li>○ 사업내용 : 충북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</li> <li>○ 출연금액 : 3,674백만원</li> <li>- 연구원 운영 3,274백만원(479백만원 증)</li> <li>- 특별연구조직(공공투자분석센터) 400백만원(50백만원 증)</li> </ul>			
<b>출자·출연필요성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차 산업혁명, 일자리, 환경 등 새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,</li> <li>○ 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출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함</li> </ul>			
<b>근거법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</li> <li>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</li> <li>○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</li> <li>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li> </ul>			
<b>검토의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충북연구원 기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</li> <li>○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 및 새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일자리, 환경 등 주요정책 분야의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</li> <li>○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</li> <li>○ 특히, 2017년 연구원 청사 신축에 기금사용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세입 감소와 충북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 대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</li> </ul>			

<b>주관부서</b>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두표	한충완	이미혜	220-2134

### 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		전화번호 : 043-220-1141 홈페이지 : www.cri.re.kr				
주요연혁	- 1990.05.15.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- 1994.12.27.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- 2011.03.24.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- 2016.04.20. 충북연구원 명칭변경		출연기관	충청북도 출연기관				
인원현황 (17. 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비정규직				
	91		31	60				
임원 (17.9월 기준)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	임기				
	이사장	○○○	충청북도지사	재임기간				
	당연직 이사	○○○	충청북도 행정부지사	재임기간				
	당연직 이사	○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재임기간				
	당연직 이사	○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재임기간				
	당연직 이사	○○○	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	재임기간				
	당연직 이사	○○○	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	재임기간				
	당연직 이사	○○○	충북연구원장	재임기간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충북지역개발회 회장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청풍로펌 변호사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충북대학교 총장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청주상공회의소 회장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세명대학교 대학원장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선임직 이사	○○○	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
	당연직 감사	○○○	충청북도 정책기획관	재임기간				
선임직 감사	○○○	공인회계사	2017. 09. 01. ~ 2020. 08. 31.		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</li> <li>-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</li> <li>- 국내·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</li> </ul>	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0,020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15	2016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'16.12.31기준	자산	13,135	
		예산액	4,661	4,819		9,800	부채	2,366
		지자체 지원액	2,750	2,750		7,945	자본	10,769
2016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7,702			7,491		211		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6조(운영경비)

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### < 출연 계획 >

<b>사 업 명</b>	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	<b>출자·출연금</b>	200,000 천원
<b>출자·출연 기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관명 : (재)한국지방행정연구원</li> <li>○ 대표 : (현재 공석임)</li> <li>○ 일반현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재지 :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</li> <li>- 인력 : 69명</li> <li>- 주요사업 : 지역 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</li> </ul> </li> </ul>		
<b>사 업 내 용</b>			
<b>사업개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기간 : 2018. 1. ~ 12.</li> <li>○ 사업내용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발전 연구사업 지원</li> <li>○ 출연금액 : 200백만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전국 16 시·도 균등출연 : 각 200백만원 (세종 100백만원)</li> </ul> </li> </ul>		
<b>출자·출연 필요성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·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활동 수행</li> </ul>		
<b>근거법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」 제3조3항</li> <li>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</li> </ul>		
<b>검토의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,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, 인건비,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※ 각 시도 균등 출연</li> <li>○ 중앙-지방간 상생·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,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</li> </ul>		

<b>주관부서</b>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두표	한충완	이미혜	220-2134

## 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				전화번호 : 033-769-9913			
					홈페이지 : www.krila.re.kr	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984.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</li> <li>- 1986.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</li> <li>- 1986.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정</li> <li>- 2002, 2004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</li> <li>-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</li> </ul>			출연기관	출연기관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)			
인원현황 (17.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(무기)			
	71		69		2			
임원 (17.9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	
	원장	1	공석					
	당연직이사 (비상임)	21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안부(4) : 지방행정연수원장, 자치분권정책관, 지역발전정책관, 지방재정정책관</li> <li>- 광역시·도(17) : 기획관리(조정)실장</li> </ul>		당해직위 재임기간			
	임의직이사 (비상임)	8인	공석		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·연구</li> <li>-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</li> <li>-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</li> <li>-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</li> <li>-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사업 등</li> </ul>	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			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	
					44,573	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	2015	2016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'16.12.31기준		
	일반회계	예산액	8,227	8,270	8,791		자산	53,866
		지자체지원액	2,125	2,550	3,300		부채	5,688
	특별회계	예산액	2,725	4,673	5,944		자본	48,178
지자체지원액		1,225	-	-				
2016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12,039			11,006		10,939		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

#### 제3조(출연금)

-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-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3.8.]

### 3 충북인재양성재단

#### < 출연 계획 >

<b>사 업 명</b>	<b>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</b>	<b>출자·출연금</b>	650,000천원
<b>출자·출연 기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 관 명 : 충북인재양성재단</li> <li>○ 이 사 장 : 이 시 중</li> <li>○ 일반현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 재 지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</li> <li>- 인 력 : 5명</li> <li>- 주요사업 : 장학사업</li> </ul> </li> </ul>		
<b>사 업 내 용</b>			
<b>사업개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</li> <li>○ 사업내용 :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및 수도권장학금</li> <li>○ 출연금액 : 650,000천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: 470,000천원(인건비 240,000천원, 경상비 230,000천원)</li> <li>- 수도권 장학금 : 180,000천원(2,000천원 × 90명)</li> </ul> </li> </ul>		
<b>출자·출연 필요성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재단 운영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</li> <li>※ 시·군 출연금 중단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재단운영비 부족분 계상</li> </ul>		
<b>근거법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</li> </ul>		
<b>검토인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인재 재능나눔, 고교생 진로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높이고 있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학금 지급(연 1,055여명, 1,326백만원)</li> <li>- 장학사업(대학인재 재능나눔 등 6개 사업. 연 700여명, 84백만원)</li> </ul> </li> <li>※ 장학기금 1,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도 50억원, 시·군 35억원을 출연하였으나,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'16년부터 시·군 출연이 불가함('17. 8. 31. 현재 적립금 : 781억원)</li> <li>⇒ 이자율 하락과 시·군 출연 중단으로 현재의 장학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재단 운영비 출연 불가피</li> </ul>		

<b>주관부서</b>	정책기획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이두표	안창복	최연락	220-2142

## 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				전화번호 : 043-224-0221 홈페이지 : www.chrdf.or.kr					
주요연혁	- '08. 2월 설립등기 - '17. 재단기금 780억 돌파(잔액기준)			기관형태 (출자,출연)	출연기관					
인원현황 ('17.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			
	5명		5명		0명					
입원 ('17. 9월 기준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입기					
	이사장(당연직)	이OO	충청북도지사		'16.09.05 ~ '18.09.05					
	이사(당연직)	김OO	충청북도교육감		'16.02.12 ~ '18.02.12					
	"	이OO	청주시장		'16.09.05 ~ '18.09.05					
	"	조OO	충주시장		'16.09.05 ~ '18.09.05					
	"	이OO	제천시장		'16.09.05 ~ '18.09.05					
	"	정OO	보은군수		'16.09.05 ~ '18.09.05					
	"	김OO	옥천군수		'16.09.05 ~ '18.09.05					
	"	박OO	영동군수		'16.02.12 ~ '18.02.12					
	"	홍OO	증평군수		'16.09.05 ~ '18.09.05					
	"	송OO	진천군수		'16.08.15 ~ '18.08.15					
	"	나OO	괴산군수		'17.07.20 ~ '18.02.12					
	"	이OO	음성군수		'16.09.05 ~ '18.09.05					
	"	류OO	단양군수		'16.02.12 ~ '18.02.12					
	"	서OO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	'16.03.18 ~ '18.03.18					
	"	오OO	충청북도 행정국장		'17.07.20 ~ '18.08.15					
	"	이OO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'16.03.18 ~ '18.03.18					
	"	김OO	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		'17.03.15 ~ '19.03.14					
	이사(선임직)	장OO	(전)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		'16.02.12 ~ '18.02.12					
	"	이OO	명정보기술 대표이사		'16.04.06 ~ '18.04.06					
	"	연OO	신한은행충북본부장		'16.04.06 ~ '18.04.06					
	"	이OO	충북농협지역본부장		'16.04.06 ~ '18.04.06					
	"	오OO	대신정기화물회장		'16.04.18 ~ '18.04.18					
	"	박OO	충원고등학교 교장		'16.04.18 ~ '18.04.18					
	"	유OO	조선일보 충북부장		'16.04.18 ~ '18.04.18					
	"	조OO	대한의사협회 부회장		'17.03.08 ~ '19.03.07					
	"	이OO	前 대성중학교 교장		'17.03.08 ~ '19.03.07					
	"	이OO	대한변호사협회 충북협회장		'17.03.08 ~ '19.03.07					
감사(당연직)	이OO	충청북도 정책기획관		'17.01.25 ~ '18.04.06						
감사(선임직)	변OO	한빛회계법인		'16.09.05 ~ '18.09.05						
주요기능	우수 인재 발굴·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			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75,000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-	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15			2016		2017			
		일반 회계	예산액		23,097	12,899	6,616	재무현황 (백만원) '16.12.31기준	자산	77,057
			지자체 지원액		9,230	620	620		부채	18
							자본	77,039		
2016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	
		2,911			1,975		936			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#### 제8조(출연)

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## 4 지방공기업평가원

### < 출연 계획 >

사 업 명	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	출자·출연금 금	60,000천원		
출자·출연 기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 관 명 : 지방공기업평가원</li> <li>○ 대 표 : 박동훈</li> <li>○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-6(서초동)</li> <li>- 인 력 : 36명(이사장1, 상임이사1, 전문직 19, 행정지원직 15)</li> <li>- 주요사업 : 지방공기업 경영지도, 자문, 사업타당성, 정책연구·교육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	
<b>사 업 내 용</b>			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기간 : 2018. 1~12월</li> <li>○ 사업내용 :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,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</li> <li>○ 출연금액 : 60,000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도별 재정력지수(50%) 및 평가대상 공기업수(50%) 감안 전국 시도별 배분</li> <li>* 17개 시도 출연금액 : 1,014백만원</li> </ul> </li> </ul>	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○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				
근거법령	○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제3항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				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,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</li> <li>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·컨설팅·사업타당성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</li> <li>○ 특히,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·예산·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5명(시도별 순번제 위촉)이 포함된 이사회(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,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 가능</li> </ul>				
주관부서	예산담당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박재국	홍순석	심호창	220-2242

### < 출연기관 현황 >

설립근거	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				전화번호 : 02-3489-2700			
					홈페이지:www.erc.re.kr			
주요 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992.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</li> <li>- 1994.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</li> <li>- 2000. 1 재)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</li> <li>- 2002.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</li> <li>- 2011.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</li> <li>- 2016. 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</li> </ul>				출연기관	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		
인원현황 (17. 9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	
	36명		36명		-			
임원 (17. 9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	
	이사장	박○○	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		2017. 1.20 ~ 2020. 1.19			
	상임이사	김○○	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		2016. 11.24 ~ 2019. 11.23			
	당연직이사 (비상임)	6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부(1) : 지방경제지원관</li> <li>- 광역시·도(5) : 기획관리(조정)실장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해직위 재임기간</li> <li>- 광역시도 윤번제 (2년임기)</li> </ul>			
	위촉직이사 (비상임)	경○○	서울대 환경공학부 교수		2017. 5.12~2020. 5.11			
		최○○	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		2017. 5.12~2020. 5.11			
		김○○	한국공기업학회 총무기획위원장		2017. 5.12~2020. 5.11			
		박○○	한국법합회 회장		2017. 5.12~2020. 5.11			
감사(비상임)	윤○○	이현회계법인 감사본부장		2017. 5.12~2020. 5.11	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,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</li> <li>-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</li> <li>-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</li> </ul>	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300			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		11,927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15	2016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'16.12.31기준	자산	18,598	
		일반회계	예산액	7,942		14,553	16,003	부채
	지자체 지원액		1,014	1,008		자본	17,147	
2016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9,082				8,096		986	

# 참고

##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시·도 출연금 배분기준

◎ 배분기준 : 재정력 지수(50%) 및 공기업 수(50%) 구간 설정

□ 규모 : 1,014백만원 (총 17개 시·도)

- 공기업 수 : 지방공사·공단 및 상하수도 366개 기관
-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(0.5~4구간)를 설정
  - 단,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·규모를 감안하여 0.5구간 설정

구간	재정력 지수	구간금액 (백만원)
0.5 (2구간 -40%)	세종, 제주	18
1 (2구간 -20%)	0.5이하 ~	24
2 (기준구간)	<b>0.5~0.7이하</b>	<b>30</b>
3 (2구간 +20%)	0.7~0.9이하	36
4 (2구간 +40%)	0.9초과 ~	42

구간	공기업수	구간금액 (백만원)
0.5 (2구간 -40%)	세종, 제주	18
1 (2구간 -20%)	1~15	24
2 (기준구간)	<b>16~25</b>	<b>30</b>
3 (2구간 +20%)	26~35	36
4 (2구간 +40%)	36~	42

※ 금액산정 기준 : 2구간 기준으로 20%씩 차등 적용  
 - 재정력 지수 평균 : 0.704, 공기업 수 평균 : 21.5(상하수도 포함)

○ 시·도별 배분 금액

(단위 : 백만원)

시·도별	출연금액			재정력 지수			공기업수		
	2017	2018 (A+B)	차액	지수	구간	금액(A)	수	구간	금액(B)
<b>합 계</b>	<b>1,008</b>	<b>1,014</b>	<b>+6</b>	<b>10.567</b>	-	<b>522</b>	<b>366</b>	-	<b>492</b>
서울특별시	78	78		1.114	4	42	31	3	36
부산광역시	60	60		0.807	3	36	9	1	24
대구광역시	54	60	+6	0.724	3	36	7	1	24
인천광역시	60	60		0.847	3	36	14	1	24
광주광역시	54	54		0.663	2	30	7	1	24
대전광역시	54	54		0.660	2	30	6	1	24
울산광역시	66	60	-6	0.891	3	36	7	1	24
세종특별자치시	36	36		-	0.5	18	3	0.5	18
경기도	84	84		1.006	4	42	96	4	42
강원도	60	60		0.362	1	24	27	3	36
충청북도	60	60		0.565	2	30	19	2	30
충청남도	66	66		0.633	2	30	31	3	36
전라북도	54	54		0.467	1	24	19	2	30
전라남도	54	54		0.476	1	24	18	2	30
경상북도	66	66		0.614	2	30	35	3	36
경상남도	66	72	+6	0.738	3	36	32	3	36
제주특별자치도	36	36		-	0.5	18	5	0.5	18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공기업법

#### 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

-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, 관련 정책의 연구,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(이하 "평가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-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.
-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. <개정 2017.7.26.>
-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,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.>
-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[본조신설 2015.12.29.]